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1998 ~ 2002년)에 의거 원가보상율이 60%미만인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별표 1]의 제증명발급수수료 총 11개 중 8개 항목을 원가보상율의 80 ~ 84%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근로자건강진단서”를 “일반건강진단서”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명칭 변경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성별및연령감정서”는 의사 문진에 의한 감정이 어렵고 관련장비가 없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안 제7조 제1항 제6호)
-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안 제7조 제1항 제7호)
- 요율조정(안) 내역 : 불임 참조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제증명발급수수료의 명칭 변경과 삭제 그리고 요율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제증명발급수수료의 명칭변경과 삭제에 대한 것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된(96.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99. 8. 29)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채용 시 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으로 구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과 민원편의에 따른 단순 명칭변경에 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별 및 연령감정은 관련장비가 없어 의사의 문진에 의한 감정이 어렵다는 현실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0조에서는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천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28조 제1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28조 제2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0조 제1항).

그러나 수수료 대상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와 같이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를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율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관련 부서의 관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 요금체계의 불균형,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관련부처의 비협조로 인한 수입원 방치 등 지방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현재 원가보상율은 62.7%임)이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1998년 ~ 2002년)에 의거 원가보상율이 60%미만인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고, 인상된 요율안도 타구와 비교하여 과소, 과중하지도 않는 적정수준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증명 발급 수수료 현황 비교

(단위 : 원)

구 분	수 수 료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일반건강진단서	1,000	600	1,000	1,000	500
채용신체검사서	1,000	600	1,000	1,000	500
일반진단서	1,000	500	1,000	1,000	500
특별진단서	3,000	2,000	3,000	3,000	2,000
사체검안서	5,000	5,000	5,000	5,000	5,000
성별 및 연령감정서	3,000	2,000	삭제	3,000	2,0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삭제	2,000	삭제	삭제	2,000
사망진단서	1,000	500	1,000	1,000	500
출생, 사산 또 는사태증명서	1,000	500	1,000	1,000	500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500	300	500	500	300
1통 초과 발급	300	100	300	300	100

- 동구보건소 : 2000. 1. 17일자로 보건소수가조례 개정
- 북구보건소 : 2000. 10. 16일자로 보건소수가조례 개정
- 남구·광산구보건소 : 수수료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자료 준비중